

20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2.

강 원 도 지 사

I 채용예정인원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남)	비고
계			3명	
경력경쟁 채 용	지방소방위	항공조종사	1명	(근무처) 양양, 횡성
	지방소방장	항공정비사	2명	

※ 항공운항관리사(2명)는 하반기 소방청 일정에 따라 별도로 시행

II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1 원서접수

- 시 간 :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단, 접수 마지막일은 18:00까지)
-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장소)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센터(<http://www.119gosi.kr>)
 - (응시수수료)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7,000원
-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등) 소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점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 확인 과정을 거쳐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원서접수시점 이전 6월 이내 촬영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천연색(JPG, GIF, PNG, BMP)으로,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 · 해상도 100dpi 이상 사진사용
- (가산점 표기) 실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자가 직접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www.119gosi.kr>)에서 표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시험일정

시험명	시험 일정						
	구 분		일정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채용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18.(월) ~ 2. 20.(수), 18:00 / 3일간 [취소기간 : 2. 21.(목) ~ 25.(월), 18:00]				
	제1차 시험	실기시험	3월중	항공조종	3.12.(화) ~ 15.(금)	4.5.(금)	
				항공정비	3.29.(금)		
	제2차 시험	신체검사·서류전형		4.5.(금)	4.5.(금) ~ 4.11.(목)		4.19.(금)
		인·적성검사			4.12.(금)		
	제3차 시험	면접시험	4월중	항공조종	5.1.(수)		5.17.(금)
항공정비				5.3.(금)			

-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예정
 - ※ 제출서류는 4.11.(목) 18:00까지 제출(우편은 4.11. 소인까지 인정)
- 응시인원, 기상 및 서류검증 기간 등의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 가능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 란(<http://local.gosi.go.kr>)에 별도 공고 및 공지
 - ※ 매 단계별 시험공고문 참조

III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및 같은법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붙임 1 참조)

※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② 거주지 제한 : 없음

③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6항(응시자격등의 기준) 준용》

시험구분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위 (항공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3. 1. 1. ~ 1996. 12. 31.
	지방소방장 (항공정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1996.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의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의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이 응시하는 경우 다음기간을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④ 응시자격 및 경력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항공조종사 (지방소방위)	<p>「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p> <p>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p>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항공정비사 (지방소방장)	「항공안전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자격(면허)증, 경력 등 증명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기간 내 인편, 등기우편 제출
- 자격(면허)증,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이며 기준일 현재 유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본인이 4대보험 가입경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력란'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군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계급별 임용일자, 부대근무경력, 징계사항 기재)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허위판명 시 당해시험 정지·무효 및 합격취소
- ① '응시하고자 함'은 '제출 기준일' 당시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 ② 기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운전면허 및 자격보유 등의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 ③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응시자격이 박탈됨을 알았을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신체조건

- 항공조종 분야
 -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름
- 항공정비 분야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별표 5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한 다음 신체조건을 갖추어

야 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별표 3의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준용(붙임 2 참조)

부분별	합격 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IV 시험절차 및 방법

1 시험절차

- (1차) 실기시험 → (2차) 신체검사·서류전형(인적성검사) → (3차) 면접시험
-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 응시 불가하나,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前) 단계 시험 합격결정 전에 다음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
- ※ 실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은 소방청 위탁 통합시험

2 제차 실기시험

- 시험 일 : (항공조종) '19. 3. 12 ~ 15. / (항공정비) '19. 3. 29.
- 시험장소 : 별도공고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조종(정비)사 자격증
- 시험과목

구분	항공조종	항공정비
평가항목	○ 시뮬레이터 및 구술평가 실시 ① 기본비행 ② 소방임무형비행 ③ 기본계기비행 ④ 항공안전 등	○ 구술평가 실시 정비분야 중 ① 기술역량 ② 관리역량 ③ 임무역량 등

- 배점 등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 ※ 실기시험 세부계획은 별도 공고
- 합격자 공고 :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③ 제2차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제출기한 : '19. 4. 11.(목) 18:00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 검사기관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붙임 8 참조)
 - 제출안내 : 신체검사 후 결과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직접 인편, 등기 제출
 -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붙임 7 참조)의 합격여부로 결정
 - ※ 항공조종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
- 서류전형
 - 제출기한 : '19. 4. 11.(목) 18:00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항공조종	① 자격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원본 1부

구분	제출서류
	㉗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㉙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항공정비	①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증 원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제출안내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기간 내 인편, 등기 제출
- 합격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적합시, 합격

보내실 곳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강원도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등기전면 명시사항) '19년 강원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인·적성검사

- 검사일 : '19. 4. 12.(금)
- 검사장소 : 별도공고
- 대상자 : 실기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인적성 집합 검사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시험안내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4 제3차 면접시험

- 시험일 : (항공조종) '19. 5. 1. / (항공정비) '19. 5. 3.
- 시험장소 : 별도공고
- 대상자 : 실기시험 합격자
- 평가요소 : 5개(붙임 3 참조)
- 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합격결정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의 평가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총점의 50% 미만 또는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 평정 시, 불합격

5 최종합격 결정

- 공고일 : '19. 5. 17.(금)
- 시험성적의 합산 : 실기시험 75% + 면접시험 25%
- 합격결정
 - 합산성적의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결정
 -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음

V 가산특전

1 대상자 및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하나만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자격증 가점은 없음

2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및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
- 가점적용 합격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일 경우만 해당)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해당않됨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1577-0606)에서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급) 제출

3] 의사상자 등

- 각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3% 또는 5% 가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의하여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가점적용 합격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일 경우만 해당)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해당않됨
- 의사상자 해당여부 및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확인, 의사상자 증명서 제출

4]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항공조종은 취업지원·의사상 가산특전 미적용, 항공정비는 취업지원 가산특전만 적용
- 가산특전은 실기시험 전일까지 발급 후 '중앙소방학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www.119gosi.kr>)에 가산특전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번호를 반드시 입력
- 접수 시 상기사항 오입력·미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
- 취업지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 모두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입해야 하며 한가지만 적용 ※ 금번 채용시험에는 적용안 됨

Ⅵ 응시자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복수 접수 불가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책임
- 접수기간 중 기재(입력)사항 수정·취소가능, 접수종료 후 불가
-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익일부터 5일 이내 응시철회 시 전액환불
- 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 필히 지참하여 응시
- 접수 시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 사진, 얼굴이 잘려나온 사진 및 부착물(모자, 선글라스 등) 착용사진 사용금지
 - ※ 동·식물 및 연예인 사진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응시불가 등 불이익 처분
- 응시결격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기간에 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자격요건(결격사유, 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추후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 ※ 상기 사항을 위반한 허위사항 접수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 정지 또는 합격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

② 실기시험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 등 필히 지참 후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안내방송 및 시험감독관(관리관) 지시 이행
-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 휴대불가하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여부 관계없이 부정처리
 - ※ 시험시작 전 필히 시험실 전면 제출, 시작 후 자진제출 또는 소지 여부 확인 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

-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
- 수험표, 신분증 등에 시험관련 사항 인쇄·메모가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

③ 신체검사 유의사항

- 모든 신체검사 소요비용은 수험생 본인 부담
- 반드시 항공조종 분야는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정비 분야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 '타 신체검사서' 또는 '수기기재된 신체검사서'는 불인정
- 신체검사서는 필히 검사를 실시한 지정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처리 및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시험 응시포기 간주
- 색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 검사(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경) 후 응시 가능여부 확인
 - ※ 특히, B형간염(보균자포함)·불합격판정기준 해당자는 사전확인
-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기간 내 본인이 예약·검사 후 신체검사 결과서를 서류전형 시 직접 제출

④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채용예정인원 미달·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합산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된 경우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무효 또는 합격취소

⑤ 경력경쟁채용 관련 유의사항

- 경력은 선발예정분야에서 직접 종사한 정기적인 급여(상근, 주 40시간)를 기준으로 산정
- 비상근·시간제 근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 경력일부 산정
 - ※ (예시)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① 연, 월, 일까지 계산 ② 역(曆)에 의해 계산 ③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무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 관련 서류는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붙임 4 참조]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필요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
 - ※ 세부사항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예정이며, 회사의 폐업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5 참조]
- 시험관련 모든 제반사항(제출서류·자격요건 등)에 거짓·위변조 등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행위자 처리, 기재·기입·제출시 사실여부 필히 확인

6 기타 유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 별도공고
 - ※ 미열람·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천재지변(폭우, 강풍 등) 시 예정대로 시행, 부득이한 경우 별도공고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허위사진등록,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미반환(시험종료 후 파쇄·소각처리)
- 모든 단계별 시험 시 수험표, 신분증 필히 지참 후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 ※ 30분전까지 시험장(시험을 실시하는 건물) 미입장 또는 미등록 시 응시포기(불합격) 간주, 또한 지정일시에 시험관련 서류 등 미제출시 동일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에 한해 인정, 학생증·자격수첩·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 등은 불인정
 -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 시험장은 금연지역으로 흡연적발 시 법적조치
-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관리, 분실 시 수험생 귀책
- 시험관련 조희기관에 응시원서·제출서류 및 자격(면허) 등 관련하여 사실여부 조회예정, 원서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수험표 분실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재출력 가능
-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별 시험공고문 확인

본 공고문 및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인사채용」에서 공지합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 인적성검사, 면접)
 - 문의처 : 소방청 장비항공과 (☎ 044-205-768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043-219-1332)
- 제출서류
 - 문의처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 033-249-5104)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등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3.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4.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5.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8.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9. 계급환산기준표. 끝.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까지 적용)

<시행일 : 2019. 4. 17.>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4. 부정행위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 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 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퀘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제1단계 면접(집단면접) 평가지표 ※

평가요소 (3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10	8.5	7	5.5	4	2.5	1
②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10점)	10	8.5	7	5.5	4	2.5	1
③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10점)	10	8.5	7	5.5	4	2.5	1

※ 제2단계 면접(개별면접) 평가지표 ※

평가요소 (2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20	17	14	11	9	6	3
②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10	8.5	7	5.5	4	2.5	1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서 명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의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병원	2017	주 임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 구조사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00시간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신 (색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검사기관	지역	주소	전화번호
1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호자동)	033-258-2313
2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남양동)	033-570-7418
3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계 급 환 산 기 준 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공 무원 또는 별 정직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 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 · 고등학 교교 원	전문대학	4년 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 방 소방령	5급		소 령	18~23 호 봉	13~18 호 봉	11~16 호 봉	과 장 차 장
소방경 지 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 위	14~17 호 봉	11~12 호 봉	9~10 호 봉	계 장, 대 리 (3년이상)
소방위 지 방 소방위	6급	경 위	중 위 소 위 준 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 장, 대 리
소방장 지 방 소방장	7급	경 사	상 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 사 원 (3년이상)
소방교 지 방 소방교	8급	경 장	중 사	4~8 호 봉			평 사 원
소방사 지 방 소방사	9급	순 경	하 사 (병)	3호봉 이 하			평 사 원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한다.